< 주요 변경 대비표 >

1. 변경대상 펀드명(변경후) 및 변경 문건:

No.	펀드명	구분	신탁계약서	투자설명서	간이설명서
1	슈로더브릭스증권자투자신탁 E(주식-재간접형)	자	O	O	O

2. 효력발생예정일(변경시행일) : 2018 년 5 월 2 일(수)

3. 주요 변경사항:

[1] 신탁계약서

- 모펀드 유형 변경(주식형->재간접형)에 따른 모펀드 투자비율 및 투자제한 변경, 펀드명 변경, 운용업무위탁계약 해지등
- 보수 인하(운용보수: 연 0.90% -> 연 0.89%, 신탁보수: 연 0.05% -> 연 0.04%, 사무보수: 연 0.02% -> 연 0.015%)
- I 클래스 정의 수정 및 V(변액보험) 클래스 삭제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펀드명칭	슈로더브릭스증권자투자신탁 E(주식)	슈로더브릭스증권자투자신탁 E(주식-재간접형)
제3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슈로더브릭스증권자투자신탁 E(주식) 슈로더브릭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슈로더브릭스증권자투자신탁 E(주식-재간접형) 슈로더브릭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제3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종류 I 수익증권 50 억원 이상의 개인 고객,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 종류 V(변액보험) 수익증권 자본시장법제 251 조에 의한 보험회사의 변액보험	종류 I 수익증권 50 억원 이상의 개인 고객, 법에 의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 <삭제>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11.종류 V(변액보험) 수익증권	<삭제>
제16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외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이하 생략>	이 투자신탁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및 중국 (브릭스) 기업들의 주식 및 주식관련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피투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현행과 동일>
제18조(투자대상 자산 취득한도)	1. 슈로더 브릭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의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이하로 한다.	1. **슈로더 브릭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의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이하로 한다.
제39조(보수)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90%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5%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89%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15%
제39조(보수)	11.종류 V(변액보험) 수익증권	<삭제>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1. <생략> <신설> 2. <이하 생략>	1. <생략> 2.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변경 3. <현행과 동일>
부칙	<신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8 년 5 월 2 일부터 시행한다.**

[2] 투자설명서

- 모펀드 유형 변경(주식형->재간접형)에 따른 모펀드 투자비율 및 투자제한 변경, 펀드명 변경, 참조지수 변경, 환헤지 방법 변경, 운용업무위탁계약 해지 등
- 보수 인하(운용보수: 연 0.90% -> 연 0.89%, 신탁보수: 연 0.05% -> 연 0.04%, 사무보수: 연 0.02% -> 연 0.015%)
- I 클래스 정의 수정 및 V(변액보험) 클래스 삭제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펀드명칭	슈로더브릭스증권자투자신탁 E(주식)	슈로더브릭스증권자투자신탁 E(주식-재간접형)
제2부. 4. 가. 업무위탁 집합투자업자 및 내용 나.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개요		<삭제>
제2부. 5. 다. 위탁집합투자업자 운용전문인력	위탁집합투자업자 운용전문인력	모투자신탁의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
제2부. 6. 나. 종류형 구조	종류 I 수익증권 50 억원 이상의 개인 고객,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 종류 V(변액보험) 수익증권 자본시장법제 251 조에 의한 보험회사의 변액보험	종류 I 수익증권 50 억원 이상의 개인 고객, 법에 의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 <삭제>
제2부. 6. 다. 모자형 구조	① 투자대상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홍콩과 대만을 포함한 중국(브라질, 러시아, 인도, 홍콩과 대만을 포함한 중국을 통칭하여 "브릭스" 라 한다)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주식 및 주식관련 증서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합니다. ② 투자전략 브릭스 국가별 투자비중은 브릭스 국가별 가중평균 시가총액방식을 기본으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슈로더의 다양한 자산배분 모델, 가치, 환율, 모멘텀, 성장, 위험 및 이자율 등의 다양한 변수들을 감안한 계량적 분석모델과 시장 및 지리적/정치적 요인 등을 감안한 비계량적 분석모델 등을 활용하여 국가별 비중 및 자산배분에 대한 투자의사 결정을 내립니다.	① 투자대상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및 중국 (브릭스) 기업들의 주식 및 주식관련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피투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합니다. ② 투자전략 **브라질, 러시아, 인도 및 중국 (브릭스)** 기업들의 주식 및 주식관련증권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산의 최소 2/3 이상을 MSCI BRIC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의 주식에 투자하며, 통상 25~50 개 기업에 투자합니다.
제2부. 6. 라. 재간접형 구조	<신설>	이 투자신탁은 룩셈부르크에서 설정된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Schroder International Selection Fund)의 하위 집합투자기구인 Schroder ISF BRIC(Brazil, Russia, India, China)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형 구조의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제2부.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외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이하 생략>	이 투자신탁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및 중국 기업들의 주식 및 주식관련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피투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현행과 동일>
제2부. 8. 가. (2)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	**<신설>** **1.브릭스 주식** **2. 채권** **3. 자산유동화증권** **4. 어음** **5. 금리스왑거래** **6. 파생상품** **7.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8. 증권대여** **9. 환매조건부매도** **10. 증권 차입** **11. 파생결합증권** **12. 유동성자산**	**1.집합투자증권: 40%이하 -> 60%이상** **2.브릭스주식: 60%이상 -> 40%이하** **3. 채권** **<삭제>** **<삭제>** **4. 금리스왑거래** **5.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6. 증권대여** **<삭제>** **7.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8. 파생결합증권** **9. 유동성자산** **10.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제2부. 8. 가. (2)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내지 4) 및 8) 내지 9)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1 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4. <생략>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1)내지 4) 및 8) 내지 9)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내지 5) 및 8) 내지 9)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행과 동일>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또는 이 투자신탁이 주식형에서 주식-재간접형으로 변경 효력발생한 날부터 1월간 2.~4. <현행과 동일>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1)내지 5) 및 8) 내지 9)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제2부. 8. 나. 투자제한	<신설>	**집합투자증권 등(1)** - 자산총액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호 본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다. 가.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 분의 70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0 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금융투자업규정 제 4-52 조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제 279 조제 1 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0 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제 279 조제 1 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 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0 까지 투자하는 경우 라.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호 나목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 분의 30 까지 투자하는 경우 마.투자자의 보호 및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칠 염려가 없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경우
제2부. 8. 나. 투자제한(계속)	<신설>	**집합투자증권 등(2)**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 분의 40 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 분의 5 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 77 조제 4 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제2부. 8. 나.(1)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제한 (계속)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 18 조 제 4 호 내지 제 6 호, 제 19 조 제 2 호 내지 제 7 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 18 조 제 6 호 내지 제 7 호, 제 19 조제 2 호 내지 제 7 호 및 제 19 조제 10 호 내지 14 호에 따른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5. <생략> 신탁계약 제 19 조제 2 호 본문, 제 19 조제 4 호 내지 제 6 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 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5. <현행과 동일> 신탁계약 제 19 조제 2 호 본문, 제 19 조제 4 호 내지 제 6 호 및 제 19 조제 10 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 또는 이 투자신탁이 주식형에서 주식-재간접형으로 변경 효력발생한 날부터 1 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2부. 9. 가.	**(1)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은 브릭스 국가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주식 및 주식관련 증서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가진 '슈로더 브릭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함으로써 투자목적을 달성하려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재산을 최대 100%까지 모투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브릭스 국가별 투자비중은 브릭스 국가별 가중평균 시가총액방식을 기본으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슈로더의 다양한 자산배분 모델, 가치, 환율, 모멘텀, 성장, 위험 및 이자율 등의 다양한 변수들을 감안한 계량적 분석모델과 시장 및 지리적/정치적 요인 등을 감안한 비계량적 분석모델 등을 활용하여 국가별 비중 및 자산배분에 대한 투자의사 결정을 내립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중 업종 및 종목별 투자는 각종 리서치자료를 바탕으로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등 다양한 계량지표에 근거하여 업종별 자산배분 및 종목별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이러한 국가별, 업종별 및 종목별 투자배정은 정기적인 분석 및 기업탐방을 통해 재조정되며 이러한 재조정은 집합투자자산의 투자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2)투자방침** ①운용 프로세스: 상세 내용 생략 ②투자비중: 상세 내용 생략 ③주요 투자대상 국가의 현황 **④참조지수: MSCI BRIC Index(USD) 30%+MSCI BRIC Index(원화환산) 70%**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4 개국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내셔널(MSCI)가 발표하는 미달러화 표시 지수의 30%와 원/미달러화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된 지수의 70%로 가중평균하여 계산된 지수입니다.)	**(1)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은 외국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슈로더 브릭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에 집합투자재산의 100%까지 투자합니다. 모투자신탁의 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 **(2)모투자신탁의 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및 중국 기업들의 주식 및 주식관련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및 투자전략** ① 피투자집합투자기구 개요 ※ 상세 내용은 투자설명서 참조 ②피투자집합투자기구 주요 투자전략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및 중국 (브릭스)** 기업들의 주식 및 주식관련증권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산의 최소 2/3 이상을 MSCI BRIC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의 주식에 투자하며, 통상 25~50개 기업에 투자합니다. ③주요 투자대상 국가의 현황 **④참조지수: MSCI BRIC Net TR Index(USD) 95% + Call 지수 5%**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4개국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내셔널(MSCI)가 발표하는 미달러화 표시 지수입니다.)

제2부. 9. 가. (4) 위험관리	① 위험관리방법 및 체계 집합투자기구는 운용위험 관리를 위하여 관련 시스템 (Best Investment Global System"BIGS"), Portfolio Risk and Investment Strategy Manager"PRISM")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포트폴리오 차원의 트레킹에러, 베타수준, 종목 집중도, 스타일 분포, 시장대비 성과 분석등 다각적인 평가와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② 환헤지 방법** **모투자신탁 내 외화자산 중 중국투자분(홍콩달러 표시 및 미국달러표시)의 평가액과 미달러 현금자산의 평가액에 대하여 담당 운용전문인력의 재량으로 80%±20% 수준에서 원/달러 선물환 등을 통한 환헤지**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상황 변동시에는 집합투자업자의 재량에 따라 수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필요한 경우에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선물, 옵션, 스왑 등)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중략> 외화자산 표시통화와 헤지통화 간의 상이로 인해 투자대상국 환율변동에 따른 환헤지 효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헤지의 기본목적인 위험회피 이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① 위험관리방법 및 체계 이 집합투자기구는 운용위험 관리를 위하여 관련 시스템 (Best Investment Global System "BIGS")을 활용하고 있으며,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상품과 포트폴리오가 성과 목표와 이에 상응하는 리스크 프로파일이 서로 부합하도록 관리하는 Schroders Investment Risk Management Framework (SIRF)를 활용하여 Risk profiling, Portfolio Management, Independent oversight 의 세가지 단계를 거쳐 다각적인 위험 평가와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② 환헤지 방법** **모투자신탁 내 외화자산의 평가금액(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표시통화로 나타낸 자산가치)에 대하여 100% 수준으로 원/달러 선물환 등을 통해 헤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상황 변동시 등에는 집합투자업자의 재량에 따라 수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필요한 경우에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 파생상품(선물, 선물환, 옵션, 스왑 등)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 현행과 동일> **달러화 표시 자산** 이외의 기타 다른 통화 자산에 대하여는 헤지거래를 수행하지 않음에 따라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투자대상자산의 통화와 헤지통화간의 상이로 인해 투자대상국 환율변동위험에 노출 될 수 있으며, 헤지가 되지 않는 통화 자산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제2부. 9.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브라질, 러시아, 인도, 및 중국 등의 국가가 포함되는 외국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 운용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Schroder ISF BRIC(Brazil, Russia, India, China)'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 운용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제2부. 10. 가. 일반위험	<신설>	**재간접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외국 집합투자증권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 가격하락등에 따라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기간내에 불가피하게 중도환매를 하는 경우 환매수수료 부담이 발생하여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으며, 다른 투자신탁보다 일반적으로 환매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환매가 연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환매도 연기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평가에 반영됩니다. 그 결과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일정기간 이전 가격으로 평가된 가격입니다.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인 외국 증권의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요 투자대상인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운영전략의 상세한 내역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제 2 부. 13. 나. 집합투자기구에 직접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천만원 수수료 및 보수 비용 예시표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90%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5%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89%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15%
제2부. 13.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I 수익증권** 50 억원 이상의 개인 고객,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 **종류 V(변액보험) 수익증권** 자본시장법제 251 조에 의한 보험회사의 변액보험	**종류 I 수익증권** 50 억원 이상의 개인 고객, 법에 의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 <삭제>
제2부. 14. 나.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신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 환급은 이 투자신탁 단계에 한정되며, 투자신탁이 자산으로 편입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환급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제3부. 3.가.&나.	**주 1) 참조지수: MSCI BRIC Index(USD) 30% + MSCI BRIC Index(원화환산) 70%**	**주 1) 참조지수: 2018 년 5 월 2 일이후부터 MSCI BRIC Net TR Index(USD) 95% + Call 지수 5%** **[변경전 MSCI BRIC Index(USD) 30% + MSCI BRIC Index(원화환산) 70%]**
제4부. 2.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업무의 위탁]	<삭제>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5부. 3. 나. (2) 수시공시	① <생략> <신설> <이하 생략>	① <생략> ②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변경 <현행과 동일>

[3] 간이투자설명서

- 모펀드 펀드유형 변경(주식형->재간접형)에 따른 모펀드 투자비율 및 투자제한 변경, 펀드명 변경, 참조지수 변경, 환헤지 방법 변경, 운용업무위탁계약 해지 등
- 보수 인하(운용보수: 연 0.90% -> 연 0.89%, 신탁보수: 연 0.05% -> 연 0.04%, 사무보수: 연 0.02% -> 연 0.015%)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펀드명칭	슈로더브릭스증권자투자신탁 E(주식)	슈로더브릭스증권자투자신탁 E(주식-재간접형)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90%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5%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89%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15%
II.1.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외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및 중국 (브릭스)** 기업들의 주식 및 주식관련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피투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모투자신탁에 집합투자재산의 100%까지 투자합니다.
II.2. 투자전략	1) 기본 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은 브릭스 국가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주식 및 주식관련 증서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가진 슈로더 브릭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함으로써 투자목적을 달성하려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재산을 최대 100%까지 모투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2) 세부 운용전략 (모투자신탁의 주요 운용전략) 모투자신탁의 국가별 투자비중은 브릭스 국가별 가중평균 시가총액방식을 기본으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슈로더의 다양한 자산배분 모델, 가치, 환율, 모멘텀, 성장, 위험 및 이자율 등의 다양한 변수들을 감안한 계량적 분석모델과 시장 및 지리적/정치적 요인 등을 감안한 비계량적 분석모델 등을 활용하여 국가별 비중 및 자산배분에 대한 투자의사 결정을 내립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중 업종 및 종목별 투자는 각종 리서치자료를 바탕으로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등 다양한 계량지표에 근거하여 업종별 자산배분 및 종목별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이러한 국가별, 업종별 및 종목별 투자배정은 정기적인 분석 및 기업탐방을 통해 재조정되며 이러한 재조정은 집합투자자산의 투자위험을 효율적을 관리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환헤지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지수: MSCI BRIC Index(USD)	1)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은 외국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슈로더 브릭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에 집합투자재산의 100%까지 투자합니다. 모투자신탁의 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세부 운용전략 (모투자신탁의 주요 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및 중국 (브릭스)** 기업들의 주식 및 주식관련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피투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환헤지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지수: MSCI BRIC Net TR

	30% + MSCI BRIC Index(원화환산) 70% <모투자신탁의 운용프로세스> <생략>	Index(USD) 95% + Call 지수 5% 3)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및 투자전략 ※ 상세 내용은 투자설명서 참조
II.3.2) **운용전문인력**	위탁집합투자업자 운용전문인력	모투자신탁의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인력
II.4. 투자실적추이	**주 1) 참조지수: MSCI BRIC Index(USD) 30% + MSCI BRIC Index(원화환산) 70%**	**주 1) 참조지수: 2018 년 5 월 2 일이후부터 MSCI BRIC Net TR Index(USD) 95% + Call 지수 5%** **[변경전 MSCI BRIC Index(USD) 30% + MSCI BRIC Index(원화환산) 70%]**
II. 7. 위험관리	집합투자기구는 운용위험 관리를 위하여 관련 시스템 (Best Investment Global System("BIGS")을 활용하고 있으며, 포트폴리오 차원의 트레킹에러, 베타수준, 종목 집중도, 스타일 분포, 시장대비 성과 분석등 다각적인 평가와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투자신탁에서는 기본적으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하지 않고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 투자신탁에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이 자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내 환헤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 투자신탁 내 외화자산 중 중국투자분(홍콩달러 표시 및 미국달러표시)의 평가액과 미달러 현금자산의 평가액에 대하여 담당 운용전문인력의 재량으로 80%±20% 수준에서 원/달러 선물환 등을 통한 환헤지**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상황 변동시에는 집합투자업자의 재량에 따라 수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운용위험 관리를 위하여 관련 시스템 (Best Investment Global System "BIGS")을 활용하고 있으며,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상품과 포트폴리오가 성과 목표와 이에 상응하는 리스크 프로파일이 서로 부합하도록 관리하는 Schroders Investment Risk Management Framework (SIRF)를 활용하여 Risk profiling, Portfolio Management, Independent oversight 의 세가지 단계를 거쳐 다각적인 위험 평가와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투자신탁에서는 기본적으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하지 않고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이 자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내 환헤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투자신탁 내 외화자산의 평가금액(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표시 통화로 나타낸 자산가치)에 대하여 100% 수준으로 원/달러 선물환 등을 통해 헤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상황 변동시 등에는 집합투자업자의 재량에 따라 수시 조정이 가능합니다.